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4. 4. 24.(수) 14: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4-21-065)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마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구문화방송(주)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주)마금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주)마금은 '20년부터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20년 6월 24일 제1차 시정명령, '22년 4월 6일 제2차 시정명령, '23년 2월 15일 제3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가> 피심인 (주)마금은 2019년 12월에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사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사업자는 주식 초과 소유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위반 사항입니다. 피심인 (주)마금은 '23년 2월 15일에 부과한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 지분을 32.5%를 소유하여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 피심인 의견입니다. 지분 처분을 위해 대구MBC 주식가치자료 등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제공하고 일간신문 매각공고 및 기업매도 계약 전문업체와 중개계약 체결 등 주식 처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특수성 등 때문에 계약체결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방통위는 동 건에 대해 피심인에게 3차례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4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피심인 고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3차 시정명령 시 시정명령 기한까지 초과지분 보유 상태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4차 시정명령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이 지분 처분을 위해 다수의 잠재적 인수자들과 접촉하고, 일간신문에 지분 매각공고 등을 하면서 위반상황 해소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우려사항 등으로 인해 잠재적 인수자들이 지분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고 시정명령 이행 기간 동안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 고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대구문화방송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3차례 시정명령이 있었고, 피심인 쪽에서 이행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방송법 위반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방송법 위반상황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MBC 주요 지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대구MBC는 MBC 본사가 51%를 소유하고 있고, (주)마금이 32.5%를 소유하고 있어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전에 행정소송은 1차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당시 행정소송 소제기가 방통위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승소사유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마금은 MBC 본사가 대구MBC 지분을 51%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32.5%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의 시정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정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심인이 3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주식 처분을 위해서 일간신문에 지분 매각 공고를 내는 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재적 인수자들이 지분 매수를 꺼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4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사무처 원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4-21-066)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삼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울산방송 지분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주)삼라에 대해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주)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 (주)삼라는 '21년 5월 1일 소속기업집단 SM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위원회로부터 다시 '21년 7월 7일 1차 시정명령, '22년 4월 27일 2차 시정명령, '23년 2월 15일 3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삼라는 '22년 12월 말 기준 자산총액 16.5조인 'SM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역민방 (주)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액출자자입니다. <나> 관련 규정입니다. 대기업은 지상파 주식을 1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위반 사항입니다. (주)삼라는 '23년 2월 15일 부과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은 현재까지 주식 소유 관계에 변동 없이 (주)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소속된 SM 기업집단의 대기업 지정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 피심인 의견입니다. (주)삼라 측은 방송업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지상파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할 만한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 규모의 성장, 방송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고, (주)울산방송 노조 측에서도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방통위는 동 위반 건과 관련하여 (주)삼라에 3차례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4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 시정명령 시 시정명령 기한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4차 시정명령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피심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 점, 지상파방송 업계의 장기간 지속되는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점, 위원회가 대기업 소유제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 고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사무처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주)삼라는 SM 그룹의 자산 증가 이유로 팬데믹에 따른 해운 호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중에 해운업 계열사의 자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M 그룹 내 해운사로서 SM상선과 대한해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대비해 '22년의 자산을 확인해 본 결과, '19년 대비 '22년에 약 3.4조 원 정도 증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주)울산방송 노조가 최대주주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접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울산방송 노조 측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방송사 소유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방통위에 시정명령을 유예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또 최초 (주)삼라가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방통위 측에 찾아와서 노조 측의 의견을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사건도 3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심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관련 소유제한 법령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서 이 사건도 관계기관 고발 여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4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다.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4-26-067)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다>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욱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경남기업(주)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와이티엔디엠비 지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남기업(주)에 대해 같은 법 제8조 제1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25일 방통위는 경남기업(주)에 대해서 1차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3년 8월 9일 방통위는 경남기업(주)에 대해서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3년 3월 20일 방통위는 경남기업(주)에 대해 3차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일 경남기업(주)은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피심인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주)은 SM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주택건설 등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

사업자인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동법 제8조 제12항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통위는 같은 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9일 의결하여 부과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심인은 현재까지 주식 소유 관계에 변동 없이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소속된 SM 기업집단의 대기업 지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소유제한 위반 해소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였으나 (주)와이티엔디엠비 및 DMB 시장 환경의 악화로 매수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와이티엔디엠비에 대한 일체의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점 등 지배력을 행사할 능력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시정명령에 따라 지분매각 등 소유제한 위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DMB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유제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재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동법 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와이티엔디엠비 경영상황 및 DMB 시장 여건상 주식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3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방금 의결했던 (주)울산방송 최대주주 (주)삼라와 경남기업(주)이 같은 SM 기업집단 회사인 것은 맞습니까?

○ 김성욱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주)삼라와 경남기업(주)은 모두 SM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입니다. (주)울산방송과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을 초과 보유하고 있어 현재 「방송법」 위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아까 경우와 같이 경남기업(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려고 주식 매도를 계속 노력했지만 실제 상황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시장 상황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 김성욱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현재 DMB 시장은 DMB 탑재 수신단말기가 감소하고 있고, OTT 활성화 등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서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때문에 (주)와이티엔디엠비도 광고수익 등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조금 전에 의결했던 두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해도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장 여건, 또 「방송법」 개정 논의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고발조치보다 다시 한번 3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안건> 나와 다 안건은 대기업집단의 방송사 소유제한 문제로 여러 방송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각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사유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종류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로 한정하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본을 국내 임시 서버에 저장하여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명시하고, 사업규모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셋째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그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령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위반행위로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의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5월, 6월에 걸쳐 규제심사를 마치고 최종안을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에 걸쳐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CDN 사업자 범위를 매출액 10억으로 잡은 것이지요?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그것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법률의 수범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CDN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 10억이 넘는 정도가 전체 몇 개사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CDN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는 사업자 중에서 10억 원 이상 규모가 되는 사업자들은 약 90여개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해외불법사이트 운영자가 CDN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서버 정보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에 복제되어서 ISP의 관문망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이용자의 우회접속도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일정 부분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안내 등을 해서 규제 예측성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CDN 사업자에게도 2차적으로 차단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그렇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는 7월 24일부로 발효되도록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방심위 심의를 통해서 불법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우회접속이 가능한 경우에 접속차단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 운영자에게도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 절차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서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사무처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제도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29분 폐회 】